

## 보증기관(HUG, HF) 보증료 할인대상 및 준비서류

□ 보증료 할인 :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신청인이 할인대상\*에 해당할 경우 보증료 할인 적용

\* 할인 대상 조건 및 보증료 할인율은 집단취급승인일 기준으로 변경 적용 되므로 주의

(1) 사회배려계층 :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,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

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(40% 할인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</li> <li>2.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</li> <li>3.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</li> <li>4.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.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.</li> <li>5.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,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(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)인 경우</li> <li>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</li> <li>8.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,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</li> <li>9.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상자 증서, 의상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</li> </ol>
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(60% 할인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. 피보증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</li> <li>10. 보증신청인이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</li> </ol>

(2) 모범납세자 :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%를 할인

(3) 전자계약 :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%를 할인

□ 보증료 할인 적용 : 보증료율을 적용한 보증료에 (1),(2),(3)의 보증료 할인율을 순차 적용

## □ 보증료율 할인 적용시 확인서류

대상	확인서류
저소득가구	○ 소득확인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 * (별첨7) 연간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준용
	○ 건강보험증(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 확인용) -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 서류 추가 징구
다자녀가구	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가구	○ 주민등록등본
	○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·군수·구청장이 발급) 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	○ 주민등록등본
신혼부부	○ 혼인관계증명서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)
	○ 소득확인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 * (별첨7) 연간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준용
한부모가족	○ 한부모가족증명서
다문화가족	○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)
국가유공자	○ 독립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
	○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
	○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
	○ 5.18민주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
	○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
	○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○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
의사상자	○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
	○ 의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
모범납세자	○ 모범납세자 증명서(우대기간 이내, 1개월 내 발급분) - 산업훈장, 산업포상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